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31호

나. 제출자 : 윤영희 의원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2. 제안이유

치매는 조기 예방 및 지속적인 진료로 질환의 진행 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는 질환으로서, 이에 치매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6조, 제7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가 치매의 예방과 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하여,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23년 968만명이며, 2025년에는 1,051만명, 2030년에는 1,2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¹⁾

1) 보건복지부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참고

- 이렇듯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는 노년기의 대표적 질환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연결되고 있으며
- 2023년 기준 금천구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4,172명으로 추정되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금천구 치매인구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천구	서울시	전국	금천구	서울시	전국	금천구	서울시	전국
60세	노인인구	58,446	2,243,671	12,575,641	60,975	2,317,874	13,153,957	64,684	2,436,519	13,856,185
	추정치매환자수	3,661	151,772	910,726	3,905	160,698	960,555	4,269	173,967	1,025,357
	치매 유병률(%)	6.26	6.76	7.24	6.41	6.93	7.3	6.6	7.14	7.4
65세	노인인구	39,098	1,540,883	8,577,830	41,004	1,608,995	9,010,545	44,531	1,714,624	9,608,981
	추정치매환자수	3,541	147,595	886,173	3,782	156,478	935,086	4,172	169,404	1,000,294
	치매 유병률(%)	9.06	9.58	10.33	9.23	9.73	10.38	9.38	9.88	10.41

※자료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
 : (2023년) 금천구 인구 - 금천구청 금천통계 '기간별연령별인구통계(2023.12)'
 : (2023년) 서울시, 전국 인구 -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령_및_성별_인구읍면동(2023)'
 : (2023년) 치매 유병률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 오늘은'

- 치매는 발병 이후 완치 또는 발병 이전으로의 회복이 어렵고 심한 건망증과 기억장애로 시작하여 피해망상과 환각증상, 판단력의 저하, 배회 등의 증세가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24시간 장기간에 걸친 수발이 요구됨.
- 따라서 24시간 장기간에 걸친 수발로 인해 치매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재정적 부담과는 별개로 크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금천구 차원의 치매 관리 조례 제정으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본 제정안의 입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서울시 3개 자치구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노인인구 및 치매인구 현황 1부. 끝.

치매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4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2023. 3. 28., 2024. 1. 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지역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인구 현황

○ 금천구 총 인구는 228,374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004명(18%)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하위 4번째로 나타남.

┃ 금천구 인구 현황 ┃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연앙인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3)

□ 고령사회 현황

○ 서울시 노령화지수는 '18년 126.8명에서 '22년 180.7명으로 늘었으며, 2050년에는 445.6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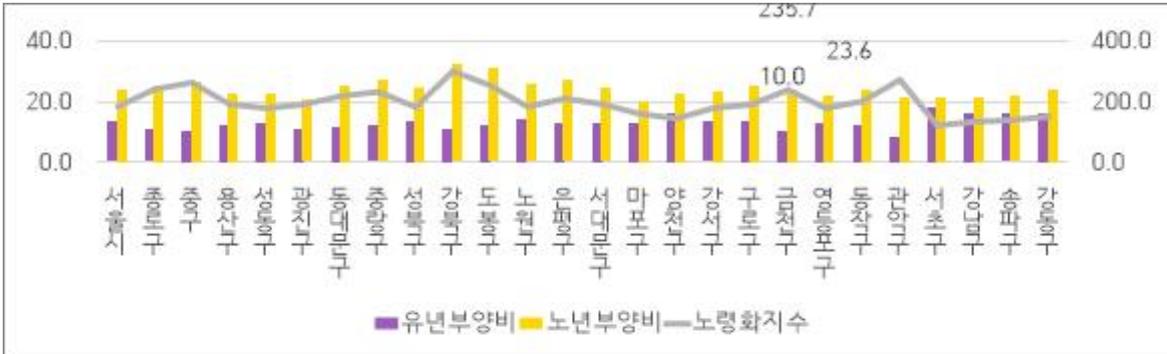
┃ 전국 노령화지수 추이 ┃



자료 : 노령화지수 (통계청, 2023)

- 금천구 유년부양비²⁾는 10으로 서울시 평균 유년부양비 13보다 낮음.
- 금천구 노년부양비³⁾는 23.6으로 서울시 평균과 동일함.
- 금천구 노령화지수⁴⁾는 235.7로 서울시 평균 노령화지수 180.7보다 높아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고령사회 현황 ▣



자료 : 서울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통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2023)

□ 취약계층 노인 현황

- 금천구 독거노인은 '18년 9,148명에서 '22년 11,425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가 필요함.

▣ 5년간 독거노인 현황 ▣



자료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 통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2023)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3,929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약 34.4%의 비율을 보임.

▣ 금천구 독거노인 현황 ▣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노인		
	계	65~79세	80세이상	계	65~79세	80세이상	계	65~79세	80세이상
금천구	11,425	8,640	2,785	3,929	2,708	1,221	722	480	242

자료 :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 통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2023)

2) 유년부양비=유소년인구(0세~14세)/생산가능인구(15세~64세)×100
 3)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15세~64세)/고령인구(65세 이상)×100
 4) 노령화지수=유년인구(14세 이하) 인구/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100

2. 지역 치매인구 현황

□ 치매 유병 현황

- 금천구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년 3,312명(8.92%)에서 '22년 3,782명(9.2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금천구 65세 이상 추정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0년 8,133명(21.91%)에서 '22년 9,145명(22.3%)으로 보고됨.

┃ 치매 유병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천구	서울시	전국	금천구	서울시	전국	금천구	서울시	전국	
60세 이상	노인인구	55,715	2,064,957	11,939,384	58,446	2,243,671	12,575,641	60,975	2,317,874	13,153,957
	치매 환자 수	3,427	135,181	863,542	3,661	151,772	910,726	3,905	160,698	960,555
	치매 유병률	6.15	6.55	7.23	6.26	6.76	7.24	6.41	6.93	7.3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	10,924	427,296	2,417,970	11,533	446,563	2,547,432	12,147	465,881	2,676,036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19.61	19.8	20.25	19.73	19.9	20.26	19.92	20.1	20.34
65세 이상	노인인구	37,126	1,396,110	8,134,674	39,098	1,540,883	8,577,830	41,004	1,608,995	9,010,545
	치매 환자 수	3,312	131,204	840,191	3,541	147,595	886,173	3,782	156,478	935,086
	치매 유병률	8.92	9.4	10.33	9.06	9.58	10.33	9.23	9.73	10.38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	8,133	327,085	1,848,995	8,622	344,325	1,949,198	9,145	362,591	2,055,569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1.91	22.27	22.73	22.05	22.35	22.72	22.3	22.54	22.81

자료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

□ 치매 상병자 현황

- 금천구 치매 상병자 수는 4,250명으로 이 중 여성의 비율은 72.1%(3,064명)로 남성 27.9%(1,186명) 보다 약 2.5배임.
- 금천구 추정 치매 환자 대비 치매 상병자 비율은 108.8%로 나타남.

┃ 치매 상병자 현황 ┃

(단위 : 명, %)

시 군 구	전체 치매 상병자 수	성별		연령		추정 치매 환자 대비 상병자 비율
		남	여	65세 미만	65세 이상	
금 천 구	4,250	1,186	3,064	630	3,620	108.8
서 울 시	144,416	43,606	100,810	14,622	129,794	89.8
전 국	972,436	279,998	692,438	80,434	892,002	112.6

자료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

□ 중증 치매 산정특례 대상자 현황

-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 제도임.
- 금천구 중증 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183명으로 추정 치매환자 대비 비율은 4.99%로 나타남.

【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 현황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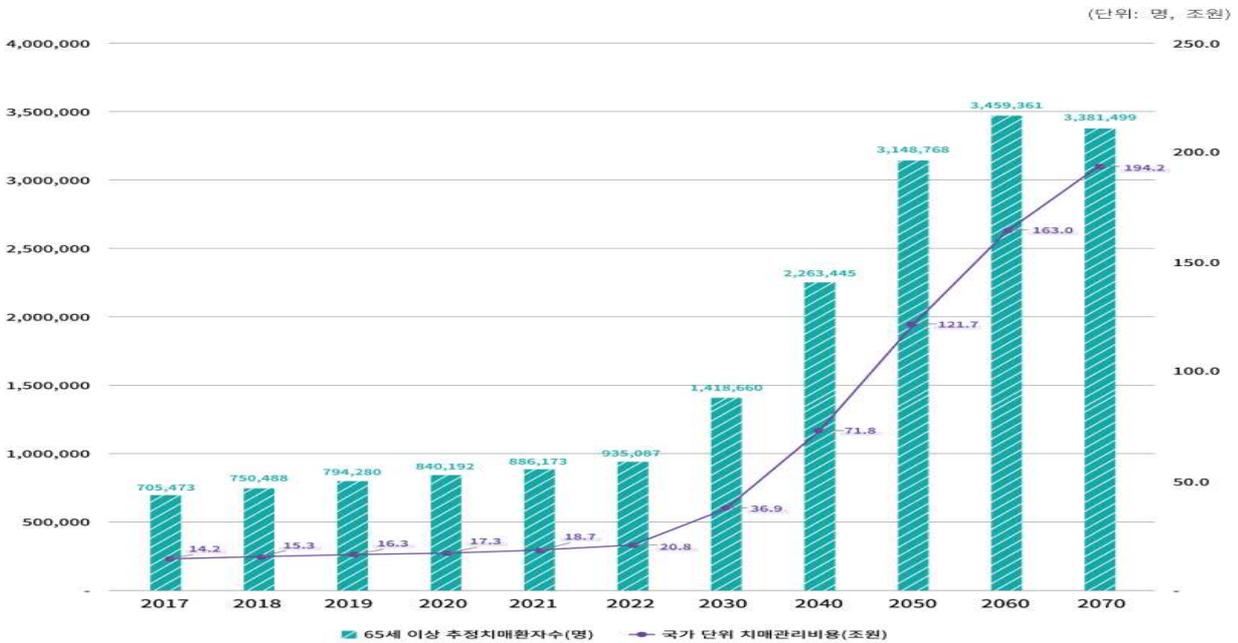
시군구	연도별 현황			추정 치매 환자 대비 산정특례 비율 (2021년 60세 이상 대상자 기준)
	2019	2020	2021	
금천구	156	162	183	4.99
서울시	6,999	7,661	8,316	5.48
전국	38,019	44,047	50,833	5.58

자료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

□ 장래 치매관리비용 추계

- 전국 인구는 '22년 약 5천 2백만 명에서 '70년 약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치매 환자 수는 증가함에 따라, 치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22년 약 18조에서 '70년 약 19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추정 치매 환자 수 및 치매 관리비용 장래 추계 】



자료 : 주민등록연앙인구 (통계청, 2023),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치매 상병자 등급별 비용 현황

- 치매상병자의 1등급 1인당 연간 급여 비용은 약 2,080만원으로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치매 상병자의 1인당 급여 비용 】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